

K-OTC거래설명서 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												
<p>p.1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-OTC 거래</td> <td>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기업의 경우만 거래가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코넥스 거래</td> <td>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요 내용	K-OTC 거래	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기업의 경우만 거래가능	코넥스 거래	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	<p>P.1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-OTC 거래</td> <td>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, 등록 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등록(지정)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는 시장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코넥스 거래</td> <td>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요 내용	K-OTC 거래	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, 등록 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등록(지정)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는 시장	코넥스 거래	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	<p>K-OTC 시장 투자자 유의사항 변경내용 반영</p>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K-OTC 거래	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기업의 경우만 거래가능													
코넥스 거래	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													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K-OTC 거래	-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, 등록 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등록(지정)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는 시장													
코넥스 거래	- 유가증권·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													
<p>p.2 가. K-OTC 시장의 성격</p> <p>- K-OTC 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신규등록(지정)요건으로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다만, K-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.</p>	<p>p.2 가. K-OTC 시장의 성격</p> <p>- K-OTC 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등록기업부 및 지정기업부의 신규등록(지정) 요건으로는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(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)이상,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,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,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으로는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을 것,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(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)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다만, K-OTC 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</p>													

나. 지정기업부의 특징

- K-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,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. 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.

다. 매매방식

- K-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(상대매매방식).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 호가가격 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. **위탁증거금율은 현금 100%입니다.**

- 신규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%~50%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$\pm 30\%$ 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^{주 3)}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주 3)기세: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때의 호가로 직전시세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높은 매수호가

등록(지정)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.

나. 지정기업부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특징

- K-OTC 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이며,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신규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. 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.

- K-OTC 시장 상장폐지지정법인은 한국거래소 코스피·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신규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회가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합니다. 상장폐지지정기업의 거래기간은 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로 제한되며, 6 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도에 지정해제 될 수 있습니다. 상장폐지지정기업은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,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, 해제, 매매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취합니다.

다. 매매방식

- K-OTC 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(상대매매방식).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 호가가격 단위를 초과하는 불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. **위탁증거금율은 현금 100%입니다**

-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의 신규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%~50%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$\pm 30\%$ 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^{주 3)}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마. 공시수준

-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,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록법인은 연 2 회 정기공시를 하고, 17 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, 금융투자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.
-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-OTC 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.
- 중소·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,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아.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

-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. 이에 따라, 등록(지정)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등록(지정)법인(발행

주 3) 기세: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때의 호가로 직전시세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높은 매수호가

-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 및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업부에 신규 등록되거나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 종목의 신규 등록(지정) 후 최초 매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MIN(상장폐지(지정해제)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(거래량가중평균주가), 상장폐지(지정해제) 전 최종 3 거래형성일의 종가(거래량가중평균주가) 산술평균)이며, 최초 매매개시일에도 기준가격의 ±30%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.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, 가격제한폭은 ±30%입니다.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마. 공시수준

-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,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등록법인은 연 2 회 정기공시를 하고, ~~17 개 항목의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,~~ 금융투자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.
- 지정법인 및 ~~상장폐지지정법인의~~ 경우에는 K-OTC 시장에서 ~~정기·수시·조회공시 등 어떠한 공시도~~ 하지 않습니다.
- 중소·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 및 ~~상장폐지지정기업의~~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,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제공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 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아.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

-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. 이에 따라 ~~K-OTC 법인의~~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, ~~K-OTC 법인(발행회사),~~

회사), 인수인, 소유지분 1% 이상이거나 3 억원 이상인 투자자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자)가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(전자공시시스템)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자본시장 시행령 제 120 조 참고)
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.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

- K-OTC 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(0.15%),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·중소·중견 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차. 기업정보 확인방법

- 등록법인의 수시공시, 조회공시는 K-OTC 시장 홈페이지,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, 분·반기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(<http://www.seibro.or.kr>)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, K-OTC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인수인, 주선인, **소유지분 5% 이상인 투자자**(단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자)가 K-OTC 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(전자공시시스템)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20 조 참고)
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.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

- K-OTC 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(**0.20%**),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·중소·중견 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차. 기업정보 확인방법

- 등록법인의 수시공시, 조회공시는 K-OTC 시장 홈페이지,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법인 및 **상장폐지지정법인의** 사업보고서, 분·반기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,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 (<http://www.seibro.or.kr>)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정법인 및 **상장폐지지정법인의**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, K-OTC 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, **지정법인, 상장폐지지정법인**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